

청주지방법원 2023. 8. 24 선고 2022가단3721 판결 [보증채무금]

전 문

원 고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중도 담당변호사 송진윤

피 고 B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한규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이형재

변 론 종 결 2023. 7. 20.

판 결 선 고 2023. 8. 24.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117,76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2. 2. 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의 부친 C은 2021. 5. 28. C의 원고에 대한 채무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은 지불각서(이하 '이 사건 지불각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공사장소 ~ 청주시 상당구 D 현장 관련 외(E)

* 당 현장에서 공사 등과 관련하여 원고 명의로 발생한 내역 등을 아래와 같이 기재하고 지급방법을 적시한다.

발생금액 ~ 170,000,000원

1) 2021. 5. 28. 20,000,000원

2) 2021. 9. 30. 50,000,000원

3) 2022. 1. 31. 100,000,000원

발생내역 ~ F 전세보증금, 세금 관련, G, H조합 원금 및 이자, I 소액임차보증금, E 건축 공사 관련, J 전세보증금, K동(상가)이자 등

○ 피고가 유치권 하고 있는 곳에서 금액 합의시 선행으로 유치권 금액을 지급한다(L)

나. 위 지불각서에는 연대보증인으로 피고의 이름이 인쇄되어 있고, 그 옆에 피고의 인감도장이 날인되어 있으며, 피고의 주민등록증 사본과 인감증명서가 첨부되어 있다.다. 원고는 이 사건 지불각서에서 정한 돈 중 2021. 10. 13. 12,000,000원을, 2022. 4. 28. 15,240,000원을, 2022. 5. 3. 25,000,000원을 각 지급받았다.

라. 피고는 청주지방법원 L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 자신을 유치권자로 신고하였다. 위 2022. 5. 3.자 지급금은 유치권 행사와 관련하여 피고의 계좌에 입금된 30,000,000원 중에서 지급되었다.

마. C은 피고 명의의 이 사건 지불각서(연대보증인 부분)를 위조하였다는 범죄사실로 벌금 3,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위 약식명령은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4,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지불각서의 연대보증 부분이 피고의 위임에 의하여 적법하게 작성된 것이고, 설령 아니라 하더라도 피고가 C의 무권대리행위를 추인하였으므로, 피고가 연대보증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지불각서의 연대보증인 부분은 C에 의해 위조된

것이고, 피고가 C의 원고에 대한 채무를 연대보증 하거나 C의 무권대리행위를 추인한 바 없다.’고 다룬다.

3. 판단

가. 이 사건 지불각서상 피고의 인영이 진정한 것임은 피고도 인정하나, 기초사실과 갑 제1호증, 을 제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C이 이 사건 지불각서에 피고의 인영을 날인한 사실이 인정된다. 이와 같이 명의인의 인영이 다른 사람에 의해 날인된 사실이 밝혀진 경우 문서의 진정성립 추정은 번복되고, 문서제출자인 원고가 작성명의인인 피고로부터 위임받은 정당한 권원에 의해 날인된 것임을 증명할 책임이 있다.

나. 이 사건 지불각서에 피고의 신분증 사본과 인감증명서가 첨부되어 있는 사실은 기초사실에서 본 바와 같다. 그런데 기초사실과 갑 제1, 6호증, 을 제6, 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통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는 C을 이 사건 지불각서에 관한 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고소하였고 그에 관한 약식명령이 확정된 점, ② 피고와 C은 부자지간으로 C이 피고의 신분증과 도장을 피고 몰래 확보하는 것이 어렵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원고는 이 사건 지불각서를 C로부터 교부받으면서 피고의 위임을 받았는지 여부를 피고에게 직접 확인하지 아니한 점(2023. 8. 9.자 참고서면에 첨부된 원고에 대한 진술조서 참조, 원고는 수사기관에서 ‘C이 피고에 대한 확인을 극구 만류하여 확인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다), ④ 이 사건 지불각서에 첨부된 인감증명서의 대리발급을 위임하는 위임장에 기재된 위임인(피고) 부분 중 ‘성명’, ‘주민등록번호’, ‘국적’, ‘주소’란 부분의 경우 피고의 필적과 유사해 보이는데, 그 아래의 ‘신분증종류’, ‘용도’, ‘위임사유’, ‘작성일자’ 등 나머지 항목의 필적은 C의 필적으로 보이고, 피고의 필적과 유사한 부분이 언제, 어떠한 용도로 작성된 것인지는 알 수 없는바, 위 위임장만으로 피고가 C에게 이 사건 지불각서의 작성과 연대보증을 위임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⑤ 피고가 유치권의 피담보채권에 관한 변제금을 원고가 지정한 계좌에 이체한 사실이 있으나, C의 부탁에 따라 단순히 송금해 주었을 가능성도 상당한바, 위 사실만으로 피고가 연대보증을 위임하였다거나 무권대리행위를 추인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앞서 든 사실과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C에게 이 사건 지불각서의 연대보증 부분 작성을 위임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가 사후에 C의 무권대리행위를 추인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권노을